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2년 1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2.1월~12월 적용 -

-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21.10월 기준)

(예) 기준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 배우자: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수급대상자 216만 명

* 자녀·부모: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 수급대상자 25만 명('21.10월 기준)

-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5%를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2.5% 인상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5%)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6,570원, 4,380원 인상

* 배우자: 26만3060원('21년) → 연 26만9630원('22년)

* 자녀·부모: 17만5330원('21년) → 연 17만9710원('22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명목임금상승률에 의해 실질 가치를 유지한 후 기본연금액을 산정함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21년) 253만9734원 → ('22년) 268만1724원

♣ 2022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신규 연금수급권자(2022년 1월~2022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예) 2010년 재평가율 1.470의 의미

2010년 대비 2021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470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470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2년)에는 147만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 의견 제출 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1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2022.1.10.

II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 전문가정위탁사업 국가 지원 실시, 아동 보호 시 월 100만 원 지원 -
- '전문위탁부모' 연중 모집(문의 1577-1406)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 보호(2021.3월 기준)

○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통해 2세 이하 영아와 특수육구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림-보도자료」, 1911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2022.1.11.

Ⅲ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 개최 (1.1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과 1월 14일(금) 오후 2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 현장 관계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종규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서 “보육 현장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알프하임 어린이집 함미영 교사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한나 어머니(만 2세 아동 보호자)와 함정규 아버지(만 5세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자 관점의 보육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5명의 토론자*가 보육 현장의 의견과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 “이번 회의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129.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한국보육진흥원, 2022.1.14.

IV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많이 이용한 장소는 '본인 집'(88.8%), 산후조리원(81.2%) 순이고(복수 응답 가능),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2일이며, 산후조리 평균 비용은 249만 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산후조리: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함

-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20에 따라 산후 산모·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 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 통계청과 함께 지역·산모 연령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 후 면접 조사 및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산후조리 현황,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 조사

** 전체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연구/조사])에서 확인 가능

-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소) 장소별 이용률은 '본인집'(88.8%), '산후조리원'(81.2%), '친정'(13.7%), '시가'(1.5%) 순으로 나타났다. * 중복 응답 가능 문항

-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도시지역(동부)'(82.9%)이 '농어촌지역(읍면부)'(73.1%)보다, '첫째아'(88.4%)가 '둘째아 이상'(71.7%)보다 높고, 만24세 이하 산모가 57.5%로 가장 낮았다.
 - * 2018년보다 '산후조리원(75.1%→81.2%)' 및 '본인 집(70.2%→88.8%)' 이용은 증가하고, '친정(19.8%→13.7%)' 및 '시가(2.4%→1.5%)'에서의 산후조리는 감소하여,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이나 시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산후조리원과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78.1%), '본인 집'(16.9%), '친정'(4.6%), '시가'(0.1%) 순으로 조사되었다.
 - * 2018년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였고(75.9%→78.1%), '본인 집(17.7%→16.9%)'이나 '친정(6.0%→4.6%)'에서의 선호는 감소함.
- (만족도) '친정(4.2)'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산후조리원(3.9)', '본인 집(3.7)', '시가(3.6)'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 (실제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2일이며, '본인 집(26.8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23.7일)', '시가(20.9일)', '산후조리원(12.3일)' 순이다.
 - (장소별 기간) 2018년보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증가하였으나('본인집'(22.6일→26.8일), '친정'(22.3일→23.7일), '시가'(20.3일→20.9일)),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감소하였다(13.2일→12.3일).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증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 71.1일로 실제 산후조리한 기간과 41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 2018년보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2일 감소하였으나(32.2일→30.2일)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13일 증가(58.1일→71.1일)
- (비용) 평균 249만 원이며, 장소별 평균 비용은 '산후조리원' 243.1만 원, '집(본인·친정·시가)' 81.5만 원으로 나타났다.
 - * 2018년보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증가하였으나(220.7→243.1만 원), '집'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감소(95.8→81.5만 원)
- (산후조리 관련 결정) 산모 중 85.3%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할 때 주도적(주도적인 편 + 매우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 방법 습득'(6.3%),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5%) 순으로 나타났다.

- (산모의 건강상태 인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좋음+매우좋음)은 임신 중이 56.1%(2018년 55.5%)로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은 38.4%(2018년 41.5%)로 가장 낮으며, 조사 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1%(2018년 45.2%)이었다.
 - (산후조리 동안 불편했던 증상) 산모들은 수면 부족을 65.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상체 부위 통증(38.7%), 유두 통증(30.9%), 근육통(22.3%), 우울감(19.5%) 순으로 산후조리 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수 응답 가능 문항
- (산후우울감)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18년 50.3%)이고, 출산 후 1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 우울 위험군*은 42.7%로 높게 나타나, 산전·후 정신 건강 관리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자기기입식 산후우울증 선별도구인 에덴버러 검사결과 10점 이상인 경우
 - **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기관 연계 중이며,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인천, 대구, 전남, 경기, 경북) 설치·운영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진단·상담·치료를 지원 중임
 -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4.9%), ‘친구’(4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6.8%), ‘의료인·상담사’(6.2%)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4.9%로 조사되었다.
 - 한편,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산후조리 시 ‘산후 우울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93.0%, 79.4%로 높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은 비율은 산후조리원 27.5%, 집 17.6%에 불과했다.
- (출산·육아휴직) 출산 직전 취업 중이었던 산모는 59.8%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63.8%, 육아휴직은 56.6%가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취업 중이었던 산모의 77.5%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으로 나타났으며,
 - 배우자는 53.3%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9.0%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산후조리기간 동안 ‘다른 자녀 돌봄’(4.1점), ‘아이와 놀기’(3.9점) 항목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5점 척도)
- (필요 정부 정책)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75.6%)’, ‘배우자 육아 휴직·출산휴가 활성화(37.6%)’,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0.8%)’,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17.4%)’, ‘공공산후조리원 확대(13.4%)’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지원’(51.3%), ‘CCTV 설치’(16.9%),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11.1%),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8.6%) 순으로 비용지원과 건강·안전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 “비용과 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의산후 우울감 경험 등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개요

1. 목적

-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산후조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구축 및 산후조리원 질적 향상 도모

2. 조사기관

-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3.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2020년(2020. 1. 1. ~ 2020. 12. 31.) 출산한 산모
- 표본규모: 전국 3,210가구(3,127가구 응답 완료, 97.4%)*
- * 이전 2018년 제1회 조사 대비 표본규모 △300명, 응답률 +14.5%

5.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인터넷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기간: 2021. 8. 31. ~ 9. 10.(10일간)

6. 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일반 사항	- 산후조리장소별 이용률, 평균 이용 기간, 만족도 -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에 대한 인식 - 실제 산후조리 기간과 이상적인(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 -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 - 출산 직전의 취업 상황과 복귀 계획 - 본인과 배우자(파트너)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 - 산후조리기간 동안 배우자의 양육 참여도 -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 이용 이유, 산후조리원 유형, 평균 비용, 선택 기준 - 산후조리원 이용 및 비이용 이유 - 산후조리원에서의 모자동실 경험과 관련 인식 -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의 필요 및 불필요 이유에 대한 생각 - 모자동실 시간, 사유, 필요성 - 교육 항목별 필요도 및 경험률, 도움 정도 -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 집에서의 산후조리	- 지불한 비용, 집에서 산후조리 시 가장 큰 도움 준 사람 - 집에서 산후조리 시의 교육 항목별 필요도 및 경험률, 도움 정도 - 집에서 산후조리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
○ 산모의 건강	- 산모의 건강상태, 산후 수진 경험, 산후우울감 경험 - 산후 우울 상태, 요인별 영향 정도,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 -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구분	내용
○ 수유 및 영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 계획한 수유방법, 수유 방법 계획에 영향을 준 요인 - 모유 수유 선택 이유, 모유수유 비율, 모유를 먹이지 못한 주된 원인, 모유 수유 중단 계획 시기 - 출생아의 수유 양상, 모유 중단 시기 및 중단 이유 - 모유 수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 출생아의 치료 경험률 - 출생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실천과 사고 경험 - 출생아에 관한 주의사항 실천 여부 및 사고 경험

※ 전체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연구/조사])에서 확인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17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2.1.26.